



「우리 SAFE 예치통장」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우리 SAFE 예치통장」

· 상품특징 : 원비즈 e-MP서비스 가입한 법인사업자가 판매사 미정산대금의 의무예치비율

만큼 결제계좌와 연결하여 Swing으로 자동이체 관리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법인사업자 전용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원비즈 e-MP 서비스* 가입하여 정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법인사업자 * 원비즈 e-MP서비스: 대외시스템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기업 상품 취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서비스로 소관부서 협의 필요
상품유형	• 기업자유예금
거래방법	신규 : 영업점해지 : 영업점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결산은 연 4회 3, 6, 9,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한조건	 일부 출금 불가, 원비즈 e-MP 서비스 해지 시에만 창구를 통해 전액 출금 가능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체 및 출금 불가

	AAA AAA AAAA AAAA AAAAAAAAAAAAAAAAAAAA	
구 분	내 용	
적용이율	• 100억 미만은 기본이율 기업MMDA*에 따르되, 100억 이상은 연 1% 적용 (7일미만은 연 0.1%) * 7일이상 1억이상 연 0.1% / 5억 이상 연 0.25% / 10억 이상 연 0.3% (2025.06.09.세전기준)	
Swing서비스	 이 예금은 결제계좌와 연결되어 의무예치비율(5%~50%에서 선택)만큼 매일 자동이체됩니다. 원비즈 e-MP로부터 입수한 미정산금액을 바탕으로 의무예치비율에 따른 예치 대상금액과 이예금의 예치 잔액을 대사하여 차액만큼 결제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며,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주기마다 자동이체 재수행합니다. 	
유의사항	• 원비즈e-MP서비스 회원가입 필수이며, 해당 시스템에 판매대금 관련 미정산정보 등록 필요	
거래제한	• 본 상품은 아래와 같이 거래 제한됨 ①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② 압류 및 가압류,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정지 불가 ③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등록 불가 ④ 대출이자/카드대금결제/각종 공과금 등 일반 자동이체 등록 불가 * 본 예금과 연결된 결제계좌도 압류/지금정지/질권설정/담보설정 中인 계좌로 등록 불가	
이자 산출근거	•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함	
예금자보호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 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됨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상품전환	• 이 통장과 일반 입출금계좌 상호간에 상품전환 불가	

Lipsup Kroun Lips		
구 분	내 용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적용(이자소득세(14.0%)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6.09.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